

건축법

(1962. 1. 20일
법률 제984호)

개 정 1963. 6. 8 법1356호
1967. 3. 30 법1942호
1970. 1. 1 법2188호
1972. 12. 30 법243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 내에 있는 운전안보시설·과선교·프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은 제외한다. (1970. 1. 1. 본호 개정)
3. 특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 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 또는 오물 처리의 설비나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계양대·우편물 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6. 거실이라 함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기둥·바닥·틀보·지붕·주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속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계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물탈바르기·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963. 6. 8. 본호 개정)
11.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물탈회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를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중 1층 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수선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중 1층 이상의 구조에 대한 2분의 1 이상의 변경을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15.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서울 특별·시장, 부산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
나. 건축허가를 할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1967. 3. 30. 본호 개정)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가스기관·석유기관·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1967. 3. 30. 본호 신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 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개정)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신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또는 중요변경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도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 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신설)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신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72. 12. 30. 본호 신설)

제3 조 (적용에서의 제외)

- ① 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가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② 제3 장 내지 제5 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63. 6. 8. 본항 개정)

제4 조 (직권의 위임)

-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70. 1. 1. 본항 개정)
- ②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 (1967. 3. 30. 본항 개정)

제5 조 (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1 호 내지 제3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할때에 그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 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1963. 6. 8. 본조 개정)
-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
- 4. 기타 도시계획구역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19

63. 6. 8 본조 개정)

제6 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 ① 건축사법 제4 조 및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 조 및 제5 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 (1970. 1. 1. 본조 신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④ 건축주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 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 ⑥ 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 조 제2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7 조 (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 승인)

- ①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사 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완료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용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④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7 조의2 (중간검사)

제2 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 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7 조의3 (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 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8 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2 장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제9 조 (대지의 안전등)

①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유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파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 조의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 건축주는 대지조성 기타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경우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정리 상태가 불비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10 조 (구조 내력)

① 건축물은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토압·수압·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제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67. 3. 30. 본항 개정)

제11 조 (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① 높이 13미터 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을 제외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높이 13미터 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바닥·지붕 및 계단은 제외한다)를 석조·연화조·콘크리트부목조·무근콘크리트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제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 조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 시장·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울 지정 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13 조 식재 (1970. 1. 1)

제14 조 식재 (1970. 1. 1)

제15 조 (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목조건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제16 조 (방화벽)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되되 각 구획의 연면적은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 조 (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단층인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 (옥외 관람석에 있어서는 1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공동주택·기숙사·여관·호텔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3.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공동주택·기숙사·여관·호텔·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4.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전람회장·무도장·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 (1972. 12. 30. 본조 개정)
5.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

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 이상인 것. (1963. 6. 8. 본조 개정)

제18 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 거실에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 이상 학교·병원·진료소·기숙사 또는 여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화관·극장이나 지하의 공장물내에 설치된 사무소·점포·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성된 2개의 거실은 전 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9 조 (주택의 거실설치의 금지)

주택의 거실을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 조 (변소)

①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1970. 1. 1. 본항 개정)

② 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전항의 하수도 이외의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 조 (피뢰설비)

높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2 조 (승강기)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22 조의2 (주차장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개축(일부의 개축을 제외한다)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의 합계가 전항에 규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22조의3 (지하층의 설치)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신설)

제23조 (피난 시설 및 소화설비 등의 기준)

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23조의2 (특수 건축물 등의 내장)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 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23조의3 (온돌의 구조등)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시장 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24조 (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거실의 채광면적·천정 및 바닥의 높이·바닥의 방습방법·계단 및 번초의 구조·방화벽·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주요 구조부·기타 안전상·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서 사용하는 강재·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26조 (재해 위험구역)

① 시장·군수는 해일·고조·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③ 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3장 도로 및 건축선

제2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0. 1. 1 본조 개정)

제29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 3. 30. 본조 개정)

제30조 (건축선의 지정)

① 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당해 도로가 그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 2미터 미만에 경사지·하천·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할 때에 있어서는 당해 경사지등의 도로폭의 경계에서 수평거리 4미터의 선을 그의 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적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963. 6. 8. 본조 개정)

제31조의2 (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①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지붕의 구조 색채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삭제 (1972. 12. 30)

③ 삭제 (1972. 12. 30)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32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전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③ 공원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33조의2 (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 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③ 시장·군수는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33조의3 (절차등)

① 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 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③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로

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제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④ 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전항의 제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도시계획 제24조 내지 제28조·제33조 내지 제53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34조 식재 (1972. 12. 30)

제35조 (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 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터 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터 미만의 문 또는 담
- ② 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광고탑·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 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6조 (방화지구내의 지붕·방화문 및 인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방화지구 내외에 결철대의 조치)

1 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외의 구역에 공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 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 외의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식재 (1972. 12. 30)

제5 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제39조 (건폐율)

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준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것은 10분의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8)
6. 상업지역내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서는 10분의 9)

② 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전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39조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제39조·제39조의2·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40조 (용적율)

①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4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1972. 12. 30 단서 삭제)

② 삭제 (1967. 3. 30)

③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970. 12. 30 본항 개정)

④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⑤ 주거진흥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 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 미터 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1조의2 식제 (1967. 3. 30)

제6 장 감 독

제42조 (위반 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였을 때 (1967. 3. 30 본호 개정)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 건축물로서 제 3 장 및 제 4 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의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 될 때

4.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967. 3. 30 본호신설)

② 전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③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⑤ 누구든지 전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2조의 2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조치)

① 시장·군수는 전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 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신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3 (보고 및 검사등)

① 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

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개정)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4 (감독)

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경제·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있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4의 2 (건축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②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5조 승인 및 허가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1. 제 12 조 제 1 항 제 26 조 제 1 항 및 제 4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 3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 제 26 조 제 3 항·제 31 조의 2 · 제 33 조·제 44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972. 12. 30 본항 개정)

제7 장 잡칙

제46 조 (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시장·군수는 재해가 있는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비상 재해가 있는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 조 (가설건축물)

① 시장·군수는 도시 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972. 12. 30 본항 개정)

② 재해복구·총행·진람회·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 일 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48 조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제49 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50 조 (모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1963. 6. 8. 본조 개정)

제51 조 (공사 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 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낙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 조 (건축물의 대지가 구역·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쳐있을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지역 또는 지구(방화 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 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 면적 및 높이·건축물의 처마·천정 및 바닥높이 또는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 조의 2 (다른 법령의 배제)

① 상업지역안에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67. 3. 30 본조 신설)

②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 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 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1972. 12. 30 본항 신설)

제53 조의 3 (동전)

제 5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 9 조의 2 또는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 53 조의 4 식제(1972. 12. 30)

제 53 조의 5 (공해방지)

시장·군수는 공장에 관한 건축 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53 조의 6 (표준설계도의 활용)

① 건설부장관은 서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 5 조 및 제 22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0. 1. 1 본조 신설)

제53 조의 7 (적용의 특례)

시장·군수는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 3 제 30조, 제39조 또는 제

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1972. 12. 30 본조 신설)

제8 장 별 칙

제54 조 (벌칙)

제 5 조·제39조·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 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 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972. 12. 30. 본조 개정)

제55 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9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제10조, 제 11조, 제 15조 내지 제 17조, 제 18조 제 1 항 및 제 2 항·제 19조 내지 제 22조 제 1 항, 제 25조·제 27조 제 1 항·제 28조·제 31조·제 33조의 2 제 1 항·제 35조·제 36조 제 1 항·제 39조 제 1 항·제 41조 제 1 항 및 제 5 항 또는 제 53 조의 2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관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 시공자.
2. 제 9 조 제 4 항·제 12조 제 2 항·제 22 조 제 2 항·제 23조·제 23조의 2·제 23 조의 3 제 1 항·제 24조·제 26조 제 3 항·제 27조 제 2 항·제 31조의 2·제 32조의 1 항 및 제 3 항·제 33조·제 36조 제 2 항·제 39조 제 2 항·제 39조의 2 제 1 항·제 40조 또는 제 41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 시공자.
3. 제 6 조 제 2 항 및 제 6 항·제 7 조 제 3 항·제 7 조의 2·제 9 조의 2 제 1 항 또

는 제39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4. 제32조 제 1 항 및 제 3 항·제33조 또는 제39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5. 제 6 조 제 5 항·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공사 시공자 또는 제42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주등

6.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3 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 5 조·제 39조·제40조·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을 하는 건축주(1972. 12. 30. 본조 개정)

제56조 (동전)

제 6 조 제 3 항 또는 제 7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자·제53조의 2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또는 제 7 조 제 4 항· 제 7 조의 3 제 1 항·제29조·제42조 제 5 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72. 12. 30 본조개정)

제56조의 2 (동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 제 4 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자(1972. 12. 30 본조 개정)
- 2. 제 5 조 제 1 항단서· 제 7 조 제 1 항 또는 제47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972. 12. 30. 본조 개정)
- 3.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자(1972. 12. 30. 본조 개정)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벌칙 규정의 위임)

제26조 제 2 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에는 벌칙으로서 2 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9조 식제 (1967. 3. 30)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制令 第 18 號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④ (동전) 이 법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동전) 이 법 시행 당시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63.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 칙 (1967. 3. 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12. 3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골칫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 조의 2 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내장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 용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 (기준미달 대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는 신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